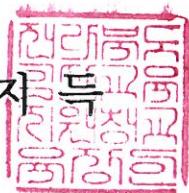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자득



2016. 6. 15.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함)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직 등"은 별표 1의 직렬을 말한다.
2. "시설관리직 등"은 별표 2의 직렬을 말한다.

제4조(일반 원칙) ① 교육장은 6급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희망서와 전보서열부 및 관내기관(학교)선택 전보희망서에 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한다.

② 시설관리직 등 공무원은 해당공무원의 근무희망기관, 생활근거지, 자격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2장 전보

제5조(전보 대상) ① 관내 전보는 동일기관에서 1년 6월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시설관리직 등” 은 동일직렬로서 동일기관(교육지원청 포함)에 다음의 기간이상 근무자는 다른 기관에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 근무연한이 도래하는 자를 포함한다.

1. 기술직군(시설관리, 운전) - 5년 이상

2.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 - 3년 이상

③ 전보희망자 및 전보대상자는 전보희망서에 근무희망 지역과 기관을 표시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내 전보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내 기관(학교)선택 전보희망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폐교 및 학급감축, 정원 감축(과원 조정 포함)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2. 인사고충상담 및 조사서 제출자 등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전보하기로 결정된 자

제6조(전보 시기) 정기 전보는 정기 인사 시기(1월, 7월)에 실시하고,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시 전보할 수 있다.

제7조(전보 방법) ① 전보는 근무희망기관, 근무경력, 근무 기관 설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전보는 관내(감축, 순환, 일반)전보와 관내 전입자 전보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는 관내 감축전보, 관내 순환전보, 관내 일반전보, 관내 전입자전보의 순환, 감축, 일반순으로 한다.

③ 전보는 전보서열부의 순위에 의하되 전보서열부 작성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정년퇴직일 기준, 퇴직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교육행정직 6급 공무원 및 신규임용자는 교육행정직 3명 이상인 기관(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휴직자의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결원이 보충된 경우의 복직자는 정기인사 시 전보희망서 등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당사자의 전보희망서에 기재된 본인의 전보 순위 평정점을 참고하여 본인의 실적에 따라 관내 순환 또는 관내 일반 전보로 분류하여 배치한다.

제9조(교육행정직 기관 및 학교 선택 전보희망제) ① 교육장은 학교급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 인사발령 1개월 전까지 각급학교에 통보한다.

② 관내 전보는 전보서열부, 교육행정직 전보희망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내기관(학교)선택 전보희망서로 하고, 교육지원청 근무 6급 이하 교육행정직은 전보서열부 평정점에 근무 월당 0.1점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교육장은 전보서열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관내직급별 결원예정기관(학교) 명부를 도교육청 인사발령 후 공개한다.

④ 도교육청 인사발령 후 전보대상자는 관내기관(학교)선택 전보희망서에 단설유치원, 초·중 각 7개교, 교육지원청(부서 구분 없음)을 선호 기관(학교)순으로 작성 제출한다.

⑤ 관내 전보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보서열부 순위에 따라 전보대상자의 제9조 제2항에 따른 전보희망서의 학교급별 및 관내기관(학교)선택 전보희망서의 전보희망기관(학교)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한다.

2. 전보서열부 후 순위로 희망기관에 배치되지 못할 경우 임의 배치한다.

3. 관내기관(학교)선택 전보희망서 미 제출자 또는 전보 희망자가 없는 기관(학교)은 임의 배치한다.

4. 다른 직급 결원에 따라 발생된 보직을 보충해야 할 경우, 관내기관(학교) 선택 전보희망서와 관내 전보서열부에 우선하여 임의배치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1. 인사고충 상담 및 조사서 제출자(장애, 질병)

2. 삭제

3. 교육지원청 희망자가 없는 경우 관내기관(학교)선택 전보희망서와 관내 전보서열부에 우선하여 배치하려고 하는 자

4. 업무상 고충, 조직부적응 등 민원발생 자에 대하여 관내 기관(학교)선택 전보희망서와 관내 전보서열부에 우선하여 배치하려고 하는 자

⑦ 교육장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내 전보대상자를 배치하고 희망학교명을 표시한 관내전보서열부 및 최종 배치 결과를 공개한다.

⑧ 민원발생자 등 제9조 제6항 제4호 요인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전보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당해 직급 하위 10% 이내로 평정한다.

제10조(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분 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발생자 등 근무평정 적용 특례) 제9조 제8항에 따른 적용은 2017년 1월 1일자 정기인사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보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전보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교육행정직 등 공무원

직종	직군	직렬
일반직	행정	행정
		전산
		교육행정
		사서
		속기
	기술	공업
		보건
		식품위생
		간호
		시설
		방송통신

[별표 2]

시설관리직 등 공무원

직종	직군	직렬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
	기술직군	운전
	기술직군	위생
	기술직군	조리
	기술직군	농업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운영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
	관리운영직군	사육운영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

(별지 1호 서식)

관내 기관(학교)선택 전보희망서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생활근거지(

시

구

동)

☎(자택

, 휴대전화

)

전보 희망 기관(해당란에 기관명을 정확히 기재)

학교
급별

희망기관①

희망기관②

희망기관③

희망기관④

희망기관⑤

희망기관⑥

희망기관⑦

희망기관⑧

희망기관⑨

학교 급별	희망기관①	희망기관②	희망기관③	희망기관④	희망기관⑤	희망기관⑥	희망기관⑦	희망기관⑧	희망기관⑨
유									
초									
중									
기관									

* 기관선택

- 정해진 기한까지 미제출 시 임의 배정함.
-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정보마당/인사정보/일반직인사)에 공개된 관내 전보서열부, 학교급별 · 직급별 결원에 정현황을 참조하여 단설유치원, 초·중학교 각 7개교, 교육지원청(부서 구분 없음)을 작성하시기 바람.
-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배치 할 수 있음.

(별지 2호서식)

2016.7.1.자 학교(기관)별 직급별 결원 예정현황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우리청에서 도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기관(학교)선택 전보희망제】 운영상 학교선택기회가 5개교에 그쳐 공무원의 자기선택권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전보당사자가 근무를 희망하는 학교급에 대한 선택 기회를 7개교로 확대 보장
-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하여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안정성을 도모하여 일선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 삶의 질 향상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축을 위한 인사관리기준 조항 보완

■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개정 조항 적용(인사관리기준 제5조)
 - 1) (전보제한기간 변경) 전보대상 필수보직기간 1년 6개월로 변경
- 나. 교육행정직 학교선택 전보희망제 보완(인사관리기준 제9조)
 - 1) 근무희망학교 선택지 7개교 부여로 공무원 선택의 폭 최대한 존중
 - 2) (교육청 근무자 부서 이동 보장)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보직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익산교육지원청 근무자 부서간 이동 기회 보장
 - 3) (고령자 우선 배치 기준) 도교육청 지침 퇴직잔여기간 3년 이내 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자와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 제고
 - 4) (업무상고충, 조직부적응자 배치) 업무미숙 및 조직부적응 등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자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 및 과도한 특혜를 배제하여 운영의 실효성 확보와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 제고